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정 2008.11.20.
개정 2009.06.30.
개정 2009.09.07.
개정 2009.09.23.
개정 2010.12.29.
개정 2011.11.12.
개정 2012.01.18.
개정 2012.03.27.
개정 2013.08.16.
개정 2016.04.18.
개정 2016.08.30.
개정 2017.01.02.
개정 2018.06.01.
개정 2018.11.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이하"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1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개정 2011.11.12.>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개정 2011.11.12.>
3. 디자인정책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개정2013.08.16.>
4.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개정 2013.08.16.>
5.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개정 2013.08.16.>
6. 디자인지원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학원운영<개정 2011.11.12.>
7.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운영<개정 2012.01.18.>
8.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개정 2013.08.16.>
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운영<신설 2018.06.01.>
10.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3.08.16.><개정 2016.04.18.>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1.11.12.>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17.01.02.>
4. 감사 2인

② 이사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당연직 이사와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개정 2011.11.12.>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2.>

② 시장은 대표이사를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12.>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개정 2012.03.27.><개정 2016.04.18.>
2. < 삭제 ><개정 2013.08.16.>
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2.03.27.><개정 2016.04.18.>

④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2.01.18.>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

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2.><개정 2017.01.02.>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06.01.>

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11.11.12.>

제11조(대표이사와의 계약) ① 재단은 대표이사가 임명된 경우 이사회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안에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11.12.>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3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1.11.12.>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11.12.>

1. 경영전문가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5. 기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내규가 승인 및 확정되는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06.01.>

②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2.>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27.>**<개정 2018.11.00.>**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직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6.01.>

⑤ 상근직 임원은 대표이사에 한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06.0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6.01.>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6.01.>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개정 2018.06.01.>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개정 2018.06.01.>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8.06.01.>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정관을 위반한 때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12.>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 ·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8.30.>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06.01.>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06.01.>

제27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 ·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30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3.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4.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하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제3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6.01.>

제37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2.>

② 재단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2.>

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12.>

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6.01.>

제38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개정 2011.11.12.>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개정 2011.11.12.>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개정 2011.11.12.>

제39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법인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4.18.>

부 칙 <2009.06.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8.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신설 2018.06.01.><개정 2018.11.00.>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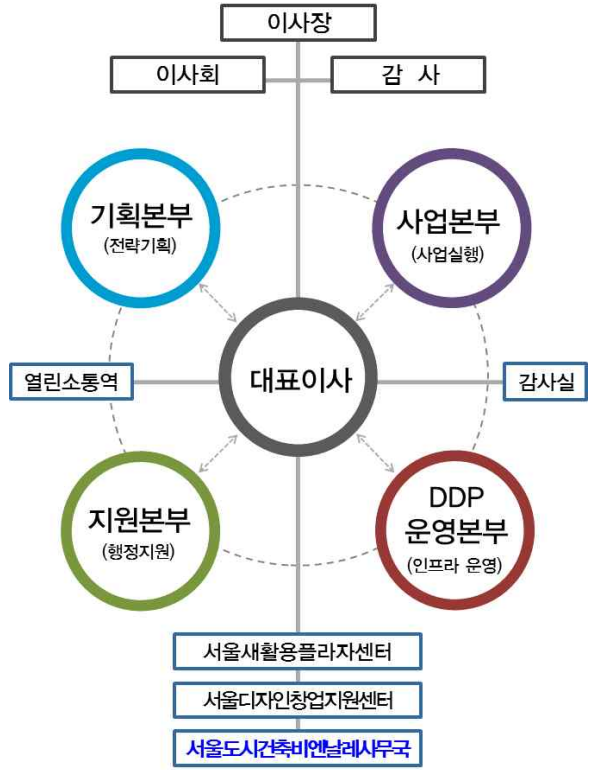

< 별표 2 > <신설 2018.06.01.>

정 원 표

정원표														
상임이사	일반직							전문직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소계	
1	4	11	14	25	33	36	123	1	4	8	12	3	28	152